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대상 교육(현장실습 직전 특별교육) 교안 관련 유의사항

1.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대상 교육시에는 배포한 자체 교안을 사용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싶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일부 추가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2. 모든 페이지를 전부 교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 인원, 소요시간,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페이지를 추가, 삭제하시고 교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3. [3.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파트의 경우, 39페이지부터 재해유형과 재해 예방 대책을 '실습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교육 전, 교육을 듣게 되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예정) 분야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분야에 따른 내용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2023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대상 강의안

현장실습직전 특별교육



교육부



한국공인노무사회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Association



CONTENTS

2023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대상 강의안
현장실습직전 특별교육

01 CHAPTER

학습중심 현장실습 살펴보기

02 CHAPTER

직접 확인해야 하는 현장실습 필수내용

03 CHAPTER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04 CHAPTER

사례로 알아보는 권리구제 방안



01

학습중심 현장실습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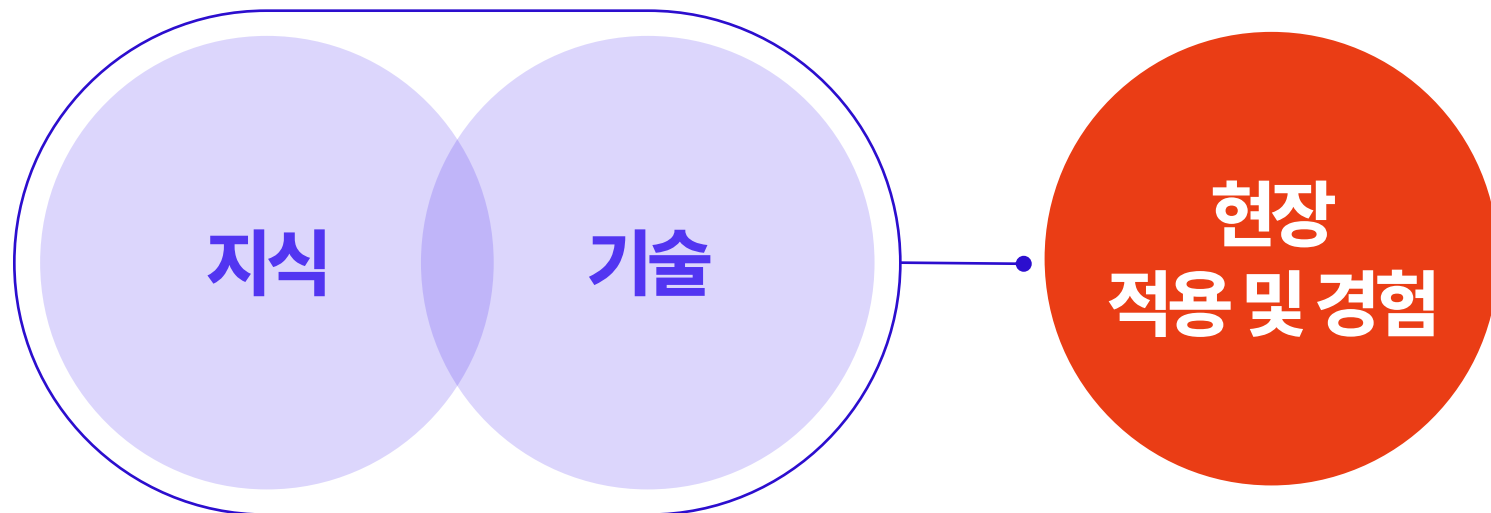
지금부터 학습할 내용은?

01. 현장실습이란?
02.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일 경험에 도움이 됩니다.
03. 현장실습생과 근로자(노동자)는 구별됩니다.
04.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장실습이란?

CHAPTER 01 | 학습중심 현장실습 살펴보기

I. 현장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 (취업약정 및 취업연계 기업 등에서 운영)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전현장
실습

직무경험·
취업지 선택

취업연계

Q. 현장실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A
사전에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현장을
직접 실습해볼 수 있고, 직무경험을 쌓고,
취업지 선택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과 근로자(노동자)의 차이

CHAPTER 01 | 학습중심 현장실습
III. 현장실습생과 근로자(노동자)의 차이점

현장 실습생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계약
3개월 이내	기간
일 경험을 통한 지식·기술·태도 학습	내용
기업현장교사로부터 일 경험 습득	방법
현장실습 수당(기업), 지원금(정부) 지급	수당 등
미가입(단, 산재만 가입)	4대보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일부 준용)	적용법령

근로자 (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
제한 없음(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음)
노동의 제공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일함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 지급
적용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노동자)가
아닙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 표준협약서 작성을 통해 현장 실습생의 권리 보호(교육부 고시 제 2018-165호)
- 기업-학교 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을 통한 직무 중심 현장실습



현장실습생 권리 교육

- 학교로부터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 인권 교육
- 현장 실습 기업체로부터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기업현장 교사

- 실습시간 중 같은 장소에서 교육과 안전관리 전담
- 기계·화공·건설 등 위험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현장 교사의 지도하에 실습



현장실습 수당 및 지원금

- 현장실습 기업으로부터 받는 교육훈련 수당
 - 4,700원(최저임금의 40%수준) 이상
- 현장실습 국고 및 교육청 지원금
 - 일 6만원(최저임금의 60% 수준)
 - 한국장학재단에 개인별 신청



실습시 발생하는 문제 지원

- 학교(교장(감), 교사, 취업지원관 등)
- 학교전담노무사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 근로자(노동자)에 준함

02

직접 확인 해야 하는 현장실습 필수내용





지금부터 **학습할 내용**은?

01. 현장실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다.
02. 현장실습시 중요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대해 살펴봅시다.
03.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의 잘못된 예를 알아보시다.
04. 현장실습생이 지켜야 할 부분(의무)에 대해 살펴봅시다.

실습시간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 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야간·휴일 현장실습금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해서는 안됨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현장실습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현장실습시간 도중에 부여

생리결석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회 생리 결석 인정

휴일

1주 2회 이상 휴일 부여

사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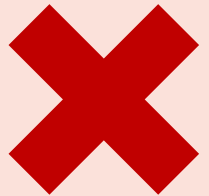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실습 할 수 없음

이외에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강제 근로의 금지, 금품청산,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됩니다.



현장실습 조건 OX 퀴즈

CHAPTER 02 | 현장실습 필수내용
1. 현장실습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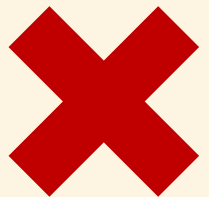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노동자)이다.

현장실습은 야간(밤10시~오전
6시)과 휴일에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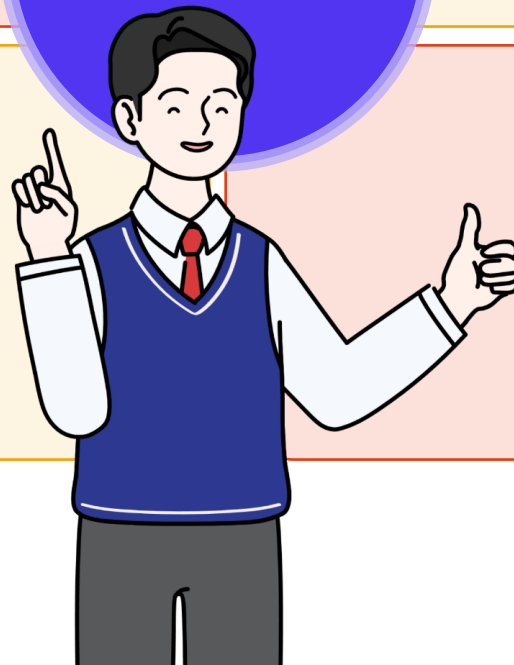


OX 퀴즈



실습생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이 바쁘면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습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없다.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방법

CHAPTER 02 | 현장실습 필수내용
II.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살펴보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모범기업** 기관대표(이하 "현장실습기관"이라 한다)와
나학생 학교학생(또는 _____ 훈련원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희망공업고등 학교장(또는 _____ 훈련원장)(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23년 10월 01일 ~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실습 시작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Check list!

01 협약당사자 : 협약 당사자를 각각 기재

- ✓ 기관대표 | 학생에게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산업체)인 현장실습기관
- ✓ 학교학생 | 현장실습생 본인
- ✓ 학교장 |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인 직업교육훈련기관

02 실습기간 : 실습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기재

- ✓ 3개월 이내 기간으로 정함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방법

CHAPTER 02 | 현장실습 필수내용
II.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살펴보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9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 시간은 **주 35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에 **7시간**(현장실습초기 적응기간일은 **00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 2에 따라 1일 7시간 이내,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일 1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사항에 ✓ 표시



동의



비동의



Check list!

03

현장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을 기재

-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원칙
- ✓ 당사자(현장실습 기업과 학생) 간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 초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면 필요 시간 기재

04

현장실습 시간연장 :

현장실습시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 **동의에** ✓ 표시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방법

CHAPTER 02 | 현장실습 필수내용
II.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살펴보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9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60** 분 (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10**분)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현장 실습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현장실습 시간 중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 ④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Check list!

05 휴식시간 : 휴식시간을 기재

- ✓ 현장실습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 현장실습 시간 도중에 휴식 부여

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마다의
휴식시간 기재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방법

CHAPTER 02 | 현장실습 필수내용
II.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살펴보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3조 (현장실습 수당 및 용품 등)

- ① “현장실습기관”은 식비, 교통비, 복지비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수당을 다음과 같이 매월 **31**일에 지급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다 음

2023년 10 월 01일 부터 ~ 2023년 10월 31일까지
매월(31일) 정해진 수당 금액 원

Check list!

06

현장실습수당 : 수당 지급일, 수당기간, 수당금액을 기재

수당 지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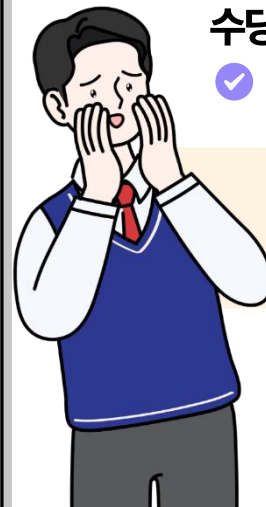
- ✓ 매월 정해진 수당 지급일을 기재 (*예:매월 5일,매월 말일등)

수당지급기간과 금액

- ✓ 수당의 지급기간 명시

수당 금액

- ✓ 현장실습 기업에서 지급하기로 한 수당 금액 기재



무단 결근하는 날은 실습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방법

CHAPTER 02 | 현장실습 필수내용
II.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살펴보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8조 (현장실습계약의 해지)

- ①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10** 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Check list!

07 계약해지 통지

- ✓ 현장실습계약 해지 시에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기입된 해지예고일 이전, 해지예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방법

CHAPTER 02I 현장실습 필수내용
II.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현장실습기관	기관명	(주)모범기업
	대표이사	이대표 (인)
현장실습생	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번지
	성명	나학생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명	희망공업고등학교
	대표	학교장 (인)

Check list!

08 협약서 교부

-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1부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안돼요!

CHAPTER 02 | 현장실습 필수내용
III.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잘못된 예



현장실습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 관할 교육청장**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일 8시간 이내,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현장실습기관이 현장 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실습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 2023년 10월 31일 (5개월)로 한다.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대상 : 현장실습기관 – 현장실습생 – 직업교육훈련기관(3자 계약)
체결방식 : 협약은 협약 대상인 3자가 함께 동석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실습시간 확인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원칙

실습기간 확인 : 3개월 이내

계약해지시 **사전에 예고**

모든 칸은
공백없이
채워넣기!



현장실습생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CHAPTER 02I 현장실습 필수내용
IV. 현장실습생 준수사항

현장실습생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기계·화공·건설 등 위험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01

출/퇴근 **실습시간 준수하기** 02

현장실습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03

현장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질서 준수하기** 04

사업장의 **기계, 도구, 장비** 등이 파손·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기** 05

현장실습 중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이나 영업기밀 누설하지 않기** 06

03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 안전





지금부터 학습할 내용은?

01. 현장실습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02. 현장실습생은 위험한 작업을 중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03. 실습 전 꼭 알아야 할 개인보호구, 안전표지판에 대해 살펴봅시다.
04.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과 예방대책을 학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현장실습생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
사업주의 의무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I. 작업 중지권 및 거부권



그림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나침반 (건설업, 2021)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I. 작업 중지권 및 거부권

NO!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이란?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I. 작업 중지권 및 거부권

“**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은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중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급 시도 교육청은 작업거부권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제1항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

-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2022. 4. 21. 시행)
-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5조 (2022. 3. 1. 시행)
-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6조 (2023. 5. 30. 시행)



기존

발생 후 조치

치료
지원

+

산재
급여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변경

안전보장 강화

기존
보호

+

작업
중지권

+

작업
거부권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 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는 이번에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고객들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실습을 하면서 폭언을 듣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실습생은 고객 응대 중 실습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은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고객응대 현장실습생에게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현장실습생에게는 **안전하게 실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I. 작업 중지권 및 거부권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에게
사업주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실습의 중단을
요청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실습생의 권리입니다.



현장실습생이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 (현장실습생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현장실습생은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조치한 사항 (안전모 착용, 호흡용 보호구 지급, 보호복 등의 비치, 명칭 등의 게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

-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현장실습 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작업복, 개인용 공구, 안정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작업복, 안정보호구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현장실습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지급받은 보호구는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개인보호구 착용은 산업안전의 시작입니다!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II. 개인보호구 및 안전표지판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노동자)가 떨어질 위험
이 있는 작업 시 착용

안전화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

안전장갑



전기 감전 및 각종 화학물질 오염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

방진 및 방독마스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및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시 착용

보호복



고온 및 고열 작업이나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착용

보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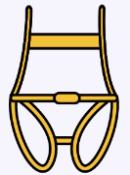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

청력보호구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시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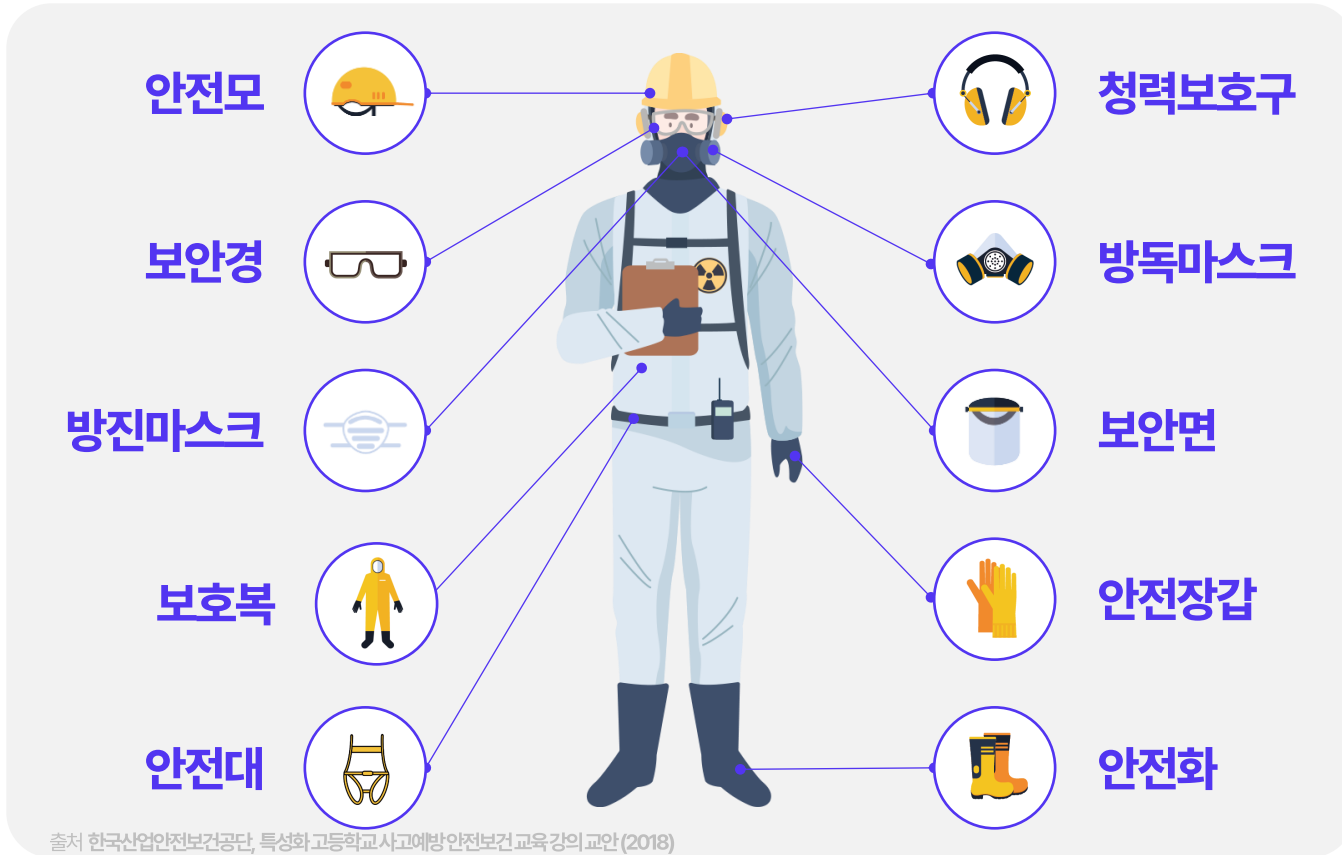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착용

개인보호구 착용은 **산업안전의 시작**입니다!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II. 개인보호구 및 안전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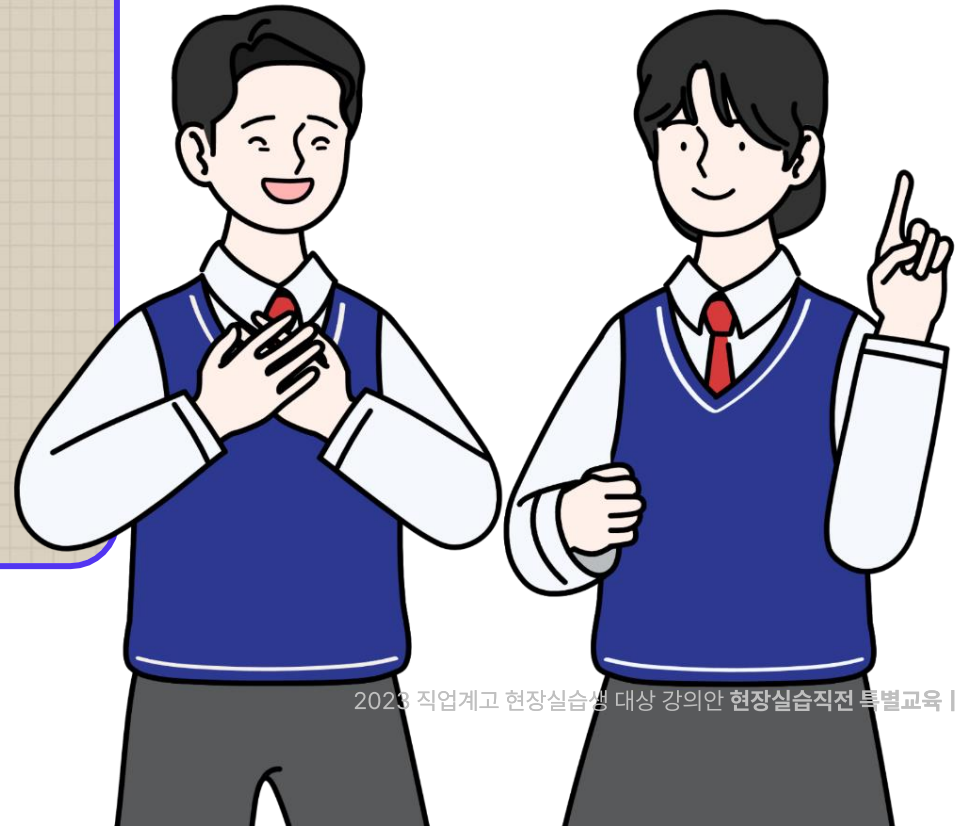
안전 표시판 바로알기!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II. 개인보호구 및 안전표지판



산업현장의 4대 필수 안전수칙 IV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위험한 곳엔 안전표시판이 있다!
바로 알고 대처하자~!



출처: Youtube, 안전보건공단안전젤이, 2015 12. 15. [3:06]

기계, 제조분야 | 벨트 컨베이어 작업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V. 실습 중 발생하는 재해 분야 및 예방대책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가동 중인 컨베이어 하부 퇴적물을 청소하거나, 점검, 수리 중에 신체의 일부가 끼임
- 컨베이어 상부에 적재되어 운반되는 운반물이 낙하하며 타박상
- 가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하다가 낙상
- 가동 중인 컨베이어 위를 임의로 건너다 넘어짐

재해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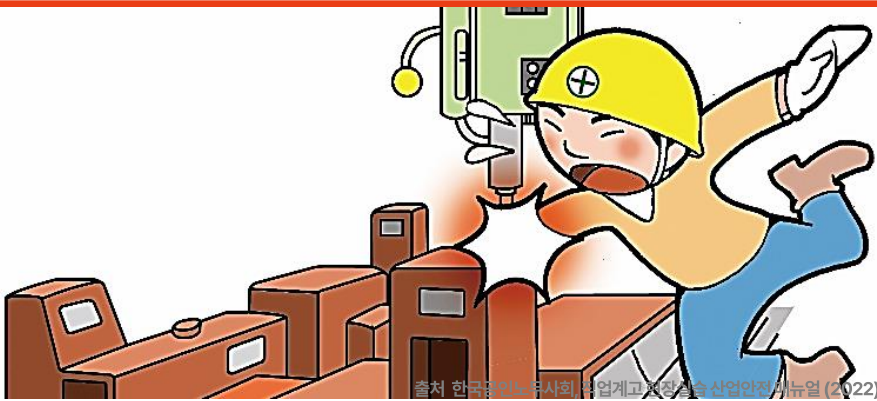
기업

- 벨트 컨베이어 가동 중 정비, 보수, 점검, 청소 등의 작업을 금지한다.
- 청소 및 롤러교체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하고, 비상시 연락조치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다.
- 정비·수리작업 중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수리 중” 표지판을 설치한다.
- 체인, 풀리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 컨베이어 위로 통행을 금지하고, 이동을 위해서는 건널다리 등을 설치한다.

실습생

- 벨트 컨베이어의 적재물은 적정하게 적재하며, 벨트 컨베이어 위에 올라서거나 불안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가동 중인 벨트 컨베이어 주위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어 말리지 않도록 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 회전하던 가공물이 튕겨 나가 작업자가 맞음
- 가공작업 중 칩 날림에 의한 눈 등의 부상
- 작업발판을 헛디려 넘어짐
- 가공작업 확인 중 회전하는 날에 감김·끼임
- 선반작업 시 장갑 착용에 의한 회전부 말림
- 밀링 작업 중 절삭 칩이 튀어서 절단·베임·찔림

재해 예방 대책

기업

- 가공물의 칩은 가공물의 회전이 완전히 멈춘 후에 제거하도록 한다.
- 가공물의 절삭 칩을 제거하기 위한 칩브레이커를 설치한다.
- 가공물 연마 작업 시에는 전용 지그를 활용하는 등 고정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 면장갑은 착용을 금지하고 옷소매를 단정히 하는 등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실습생

- 상의의 옷자락은 안으로 넣는다.
- 칩을 떨어낼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떨어내지 않고 브러시 등 도구를 사용하여 떨어낸다.
- 회전 중에 가공품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
- 밀링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을 금지하고, 작업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제 등의 장갑을 착용한다.

기계, 제조분야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V. 실습 중 발생하는 재해 분야 및 예방대책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작업보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지게차 뒤집혀 작업자가 깔림
- 지게차 포크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 운전자 시야불량으로 다른 작업자와 충돌
- 화물 과적 및 적재불량으로 화물이 넘어져 다침

재해 예방 대책

기업

-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전을 금지시킨다.
-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편하중을 금지하고 전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 지게차 운행통로 확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및 유도자 배치를 한다.
- 지게차의 헤드가드 설치, 비상등 작동 유무를 확인 한다.

실습생

-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전하지 않는다.
- 지게차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승차석 외 탑승하지 않는다.
- 과속 주행하지 않는다(제한속도 10km/h 등).
-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 중량물 적재하중을 준수하고 급선회 운행하지 않는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산소결핍
- 불꽃에 의한 화상
- 용접 아크, 흠 등에 의한 호흡기 질병 등
- 감전사고 등

재해 예방 대책

기업

-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작업허가서에 따라 실시한다.
- 용접작업장 주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의 방치를 금지시킨다.
-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누출을 방지한다.
- 화염, 스파크 등이 빠져 나가지 않게 덮개로 차단한다.
- 소화기를 비치한다.
-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색상 표시 등을 조치한다.

실습생

-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날카로운 모서리와 마모표면, 차량에 부딪힐 수 있는 장소에는 호스를 놓지 않는다.
- 가스통은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다.
- 작업이 종료되면 항상 가스통의 밸브를 잠가서 가스공급을 차단한다.
- 개인보호구(용접용 보안경 및 보안면, 용접용 장갑, 방진마스크, 안전화 등) 착용을 철저히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성화 고등학교 사고예방 안전보건 교육 강의 교안 (2018)

- 전기 충전부 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 (직접접촉)
-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 (간접접촉)
- 특별고압 충전전로 근접 접근시 감전 (비접촉)
- 낙뢰로 인한 감전
- 전기기계·기구 절연파괴로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
-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 사용에 의한 감전
-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시 감전

재해 예방 대책

기업

-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에 대한 직접 접촉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한다.
-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에 접지를 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휴대형은 이중절연 기기를 사용한다.
- 이동·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정전전로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정전 작업 시 해당 전로의 차단 등 안전작업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전원 재공급 시에도 안전작업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 충전전로 등에서 안전작업 절차(정전조치, 방호·차폐·절연 등의 조치, 절연용 방호구 등의 사용 등 준수 철저, 접근한계거리, 감시인 배치 등)를 준수한다.

실습생

- 안전보건표지(고압전기 경고)를 확인한다.
- 전기기계·기구의 전기 충전 노출부를 접촉하지 않는다.
-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공구를 사용한다.

전기, 전자, 화공 분야 I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V. 실습 중 발생하는 재해 분야 및 예방대책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안전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관리대상물질에 따라 표적 장기(간, 폐, 신장, 신경계, 호흡기계 등)가 다양하며 호흡·피부로 흡수돼 근로자에게 직업성암 등 건강장해 유발
- 고농도 노출에 의한 화학물질 중독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미설치
- 제어풍속(흡인속도) 기준 미달
-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미착용
- 정전기 등 점화원에 의한 화재 폭발

재해 예방 대책

기업

-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전체환기장치 설치 시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 교육한다.
- MSDS를 참조하여 호흡용 보호구,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등을 지급한다.

실습생

- 지급된 보안경,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 지급된 불침투성 보호의 및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수근관 증후군**: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 전체와 넷째 손가락 안쪽의 저림, 물건을 쥐기 어려움
- **건초염**: 인대나 인대를 둘러싼 건초가 부음, 손이나 팔이 붓고 누르면 통증 발생
- **방아쇠 손가락**: 손가락이 굽어져 움직이기가 어려움, 손가락 첫째 마디에 통증

재해 예방 대책

공통

- **작업자세 바꾸기**
 - 수공구를 사용할 때 손목 굽힘, 비틀림, 어깨 들림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함
 - 어깨 팔꿈치가 들리지 않는 자세 유지
- **작업 바꾸기**
 - 한 가지 수공구로 동일 작업을 장시간 지속 시 동일 근육에 통증 및 장애 발생
 -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순환작업을 하는 등 관리 필요
- **작업방향 바꾸기**
 - 손목을 굽히거나 비틀지 않고 똑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작업방향 조정

건설 분야 I 비계 등 가설물 작업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V. 실습 중 발생하는 재해 분야 및 예방대책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자재 떨어짐
- 비계 무너짐
- 상부 작업 중 떨어질 위험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무너짐 및 넘어짐 방지조치 미흡

재해 예방 대책

기업

-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이동 및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 및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비계,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 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을 기준에 따라 견고히 설치한다.
- 이동식 비계 사용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 비계 조립 작업 중 작업자 상하 이동 시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설치·이동한다.

실습생

- 업무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관리감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자재 하역, 운반 중 부딪힘, 끼임, 맞음 및 떨어짐
- 기계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부딪힘, 끼임 등
- 위험구간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부딪힘, 끼임, 맞음 및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

기업

- 자재 하역, 양중 및 운반 작업과 지반 천공, 굴착 작업 및 토사반출 작업 중 건설기계로 인한 작업 시에는 위험작업 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한다.
- 작업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작업유도자(신호수)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 구역에서 작업을 유도한다.
- 건설기계 작업 전 건설기계의 방호장치, 용접 부위 및 이음부 등 자체 결함 여부 사전 점검을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보행자 통로를 지정한다.

실습생

- 사업주 지시에 따라 작업장을 출입한다.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추락위험 구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작업 발판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인한 넘어짐
- 화학약품에 의한 질식
-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 위험

재해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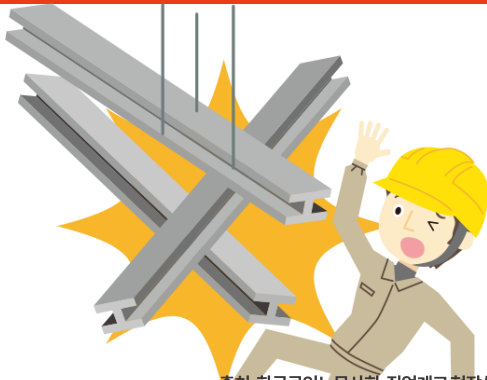
기업

- 작업계획 교육을 한다.
- 작업 반경 내 위험 구역을 통제한다.
-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안전난간 및 사다리를 설치한다.
- 미장 작업 시 시멘트, 모래, 물 혼합기 누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피니셔에 견고한 보호 덮개를 설치한다.
- 밀폐공간 방수 작업 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
- 방수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작업장 산소 및 가스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실습생

- 자재 운반 시 올바른 물건을 적재한다.
- 사업주 지시에 따른 작업 구역을 출입한다.
- 미장작업 시 피니셔는 숙련공이 운전하고 주변 작업자와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 특히 피니셔에 주유할 때 엔진을 정지한다.
- 방수작업 시 핸드 그라인더 사용 전 피복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접지상태 확인 및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토사 무너짐
- 건설장비 부딪힘
- 인양 화물 맞음

재해 예방 대책

기업

- 밀폐 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작업 위험 구간에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토사 붕괴를 방지한다.
- 도로 포장을 위한 건설기계 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 관로 운반 시 2줄 걸이로 균형을 잡고 운반해야 하며 양호한 상태의 로프를 사용한다.
-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한다.

실습생

- 올바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굴착면에 장비 근접 시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크므로 주의한다.
- 사업주 지시에 따라 작업 구역을 출입한다.



서비스, 사무직 분야 | 주방조리원, 음식서비스업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V. 실습 중 발생하는 재해 분야 및 예방대책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물기, 기름기 등에 의한 넘어짐
- 뜨거운 물, 음식 등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상
- 조리 기구에 의한 절단, 베임, 끼임
- 불완전한 자세로 인한 요통

재해 예방 대책

- 넘어짐, 미끄러짐 예방 대책
 -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한다.
 - 물기는 수시로 제거한다.
 - 미끄럼 주의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손베임, 손끼임 예방 대책
 - 깨진 유리는 즉시 제거하며, 유리 제거 시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 찌꺼기 제거 시 전원을 차단하며,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 화상 예방 대책
 - 솥의 고정 장치를 수시로 점검한다.
 - 화상 주의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발목까지 내려오는 방수 앞치마를 착용한다.
- 식자재 운반 시 불완전한 자세로 인한 요통 예방 대책
 - 식자재는 몸에 가깝게 밀착,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 균형을 유지한다.
 - 자주 사용하는 식자재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 20kg을 초과하는 식자재는 나눠서 들거나 2인 이상 또는 대차 등 보조기구 활용, 한 번에 들 수 있는 식자재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22)

- 각종 전염성 질환,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 하지정맥류 질환, 근골격계 질환(경추, 척추 디스크)
- 화상, 베임, 찢림
- 감전, 넘어짐, 미끄러짐
- 소화기 질환

재해 예방 대책

- **전염성 질환,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예방 대책**
 - 작업장 안의 환기장치(팬)를 가동시키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한다.
 - 네일 작업 시 가루 제품을 흡입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보호안경 착용
 - 시술 전 후 반드시 손, 사용도구 등을 소독,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비닐 장갑을 착용해 병균침투를 예방하며, 오염되었을 땐 즉시 버린다.
- **하지 정맥류 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 바른 자세로 작업하고, 수시로 전신 스트레칭을 한다.
 - 미용 작업 시 굽이 낮은 편안한 신발 착용, 일정 시간 앉아서 휴식한다.
- **감전, 넘어짐, 미끄러짐 / 소화기 질환 예방 대책**
 - 바닥을 수시로 청소, 정리정돈 생활화, 기타 바닥 장애물을 정리한다.
 - 작업 교대 등으로 일정 시간 균형 있는 식단, 규칙적인 식사 생활화
- **화상, 베임, 찢림 예방 대책**
 - 미용 시술 시 열기구 및 화학물질을 사용시 주의, 화상 재해를 입으면 신속하게 초기 응급처치를 한다.
 - 날카로운 미용도구·고온물체 취급에 대한 사전교육 및 안전한 사용방법을 확인한다.

서비스, 사무직 분야 | 감정노동 스트레스

CHAPTER 03 | 안전하게 배울 권리: 산업안전
IV. 실습 중 발생하는 재해 분야 및 예방대책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 **직무관련:**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 저하, 이직 의도 증가
- **정신건강:** 우울, 자살 충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건강행위:** 흡연, 음주
- **신체건강:**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한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 질환

재해 예방 대책

- **건강한 생활 습관**
 -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한다.
 - 하루 7~8시간 수면하고, 오후시간 낮잠은 피한다.
 -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
- **고객과의 갈등이 자주 떠오를 때 감정 관리법**
 -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
 - 일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 친구와 수다 떨기, 글, 낙서 등을 통하여 감정을 털어낸다.
- **감정의 자기조절, 명상, 근육이완법**
 - 주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선택한다.
 - 자명종 시계, 핸드폰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한다.
 - 손 → 팔 → 얼굴 → 목 → 어깨 → 가슴 → 배 → 다리 → 발 순서로 신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04

사례로 알아보는 권리구제 방안





지금부터 학습할 내용은?

- 01. 현장실습 중 실습 시간을 지키지 않고, 휴일에도 실습을 했어요.
- 02. 현장실습 중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어요.
- 03. 현장실습 중 다쳤어요.
- 04. 현장실습 중 성희롱, 괴롭힘,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어요.
- 05. 현장실습이 종료되었는데 실습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 06. 학교전담노무사,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7. 취업전환 후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세요.

**현장실습 중 실습 시간을
지키지 않고, 휴일에도
실습을 했어요.**

Q1

월~금 주5일, 9시~18시까지 하루 8시간(본인 동의 연장 1시간 포함)의 실습을 하기로 회사와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습기간 중, 회사사정을 이유로 정해진 실습시간을 초과하여 20시까지 실습을 하고, 휴일인 토요일에도 8시간 실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A

**실습조건 위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과 학교전담
노무사에게 위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실습시간 위반, 야간 및 휴일에 실습을 하는 것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위반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학교전담노무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실습시간 위반 및 휴일 실습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안내하였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모두 인정한 후, **학생과 학교에 사과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장실습 중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어요.



Q1

회사에서 세무 관련 업무로 현장실습을 하고 있어요. 세무 업무를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자료 정리만 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커피나 담배 심부름 같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세무 업무는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A

현장실습이 현장실습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업현장교사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학교선생님에게 해당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현장실습생은 실습 중 개인적인 심부름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학교에 알렸고, 확인 결과, 기업이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앞으로의 현장실습 지속에 대해서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의 의사를 확인한 뒤 복교 조치하였습니다.

상황별로 알아보아요!

CHAPTER 04 | 사례로 알아보는 권리구제 방안
II. 부당한 실습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현장실습 중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어요.



만약 현장실습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내용 변경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중 다쳤어요.



Q1

레스토랑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재료를 손질하던 중 제 실수로 손가락 뒷부분을 깊이 베었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가서 베인 부분을 봉합 치료하였어요.

A

회사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려 실습을 중지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현장실습생은 회사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려 실습을 중지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전담노무사는 실습 당시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기업에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치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상부위를 고려하여 주방에서의 실습이 아닌 재료의 재고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일정기간 실습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하던 중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장실습생의 실수가 있었다라도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 신청하기

CHAPTER 04 | 사례로 알아보는 권리구제 방안
III. 실습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노동자)와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치료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



요양급여

산재로 다치거나 아픈
부위가 치료될 때까지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산재 치료로
일을 못하는 동안
생계를 위해 지급

그 밖에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현장실습 중 다쳤을 때는 이렇게 해요!

CHAPTER 04 | 사례로 알아보는 권리구제 방안
III. 실습 업무 중 다쳤을 때



01

부상을 입은 사실을 **회사에**
(관리자 또는 사업주) 즉시 알립니다.

02

부상 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과 관련된
기록 또는 현장사진을 확보합니다.

* 학교 / 부모님에게 즉시 이야기하기

03

병원에서 검사,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받습니다.**
(실습하다 다친 내용이 기록에 남도록!)

04

진단 결과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합니다.

현장실습 중 몸에 통증이 생겼어요.



Q2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요. 부품이 든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자주 하고, 작업 보조를 위해 옆에서 부품을 들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허리에 계속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A

현장실습을 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외에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관련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 운반하는 회사에서 실습을 하던 학생이 무거운 상자를 지속적으로 옮기다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허리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순간적으로 긴장하거나 손상을 입는 것)을 진단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중량물의 무게, 작업기간, 반복횟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여부 별도 판단

현장실습 중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요!

CHAPTER 04 | 사례로 알아보는 권리구제 방안
III. 실습 업무 중 다쳤을 때

01

신체부담작업으로 통증이 발생한 경우
먼저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02

업무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경우 소견서를 발급 받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 학교 / 부모님에게 즉시 이야기하기

03

질병 발생의 원인(무게, 반복횟수
작업기간 등)이 된 작업을 재해경위에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 사진 / 영상 활용하기

04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합니다.



현장실습 중 성희롱, 괴롭힘을 당했어요.



Q1

현장실습 중 회사 담당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 성희롱 등을 당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저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복장과 외모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배우는게 느리다는 이유로 인격 모독으로 느낄만한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A

**부모님과 선생님, 학교전담노무사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해 학생은 학교 선생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성추행을 이유로 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가해자 징계 조치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현장실습에도 적용됩니다.

현장실습이 종료되었는데 실습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Q1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종료하였는데 수당 지급일이 되었는데도 표준협약서상 약속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A

**학교 선생님과 학교 전담 노무사에게 알려
회사에 수당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학교전담노무사는 학교 선생님과 사안을 확인하고 회사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미지급된 수당 내역을 전달하였고, 이후 실습수당 전부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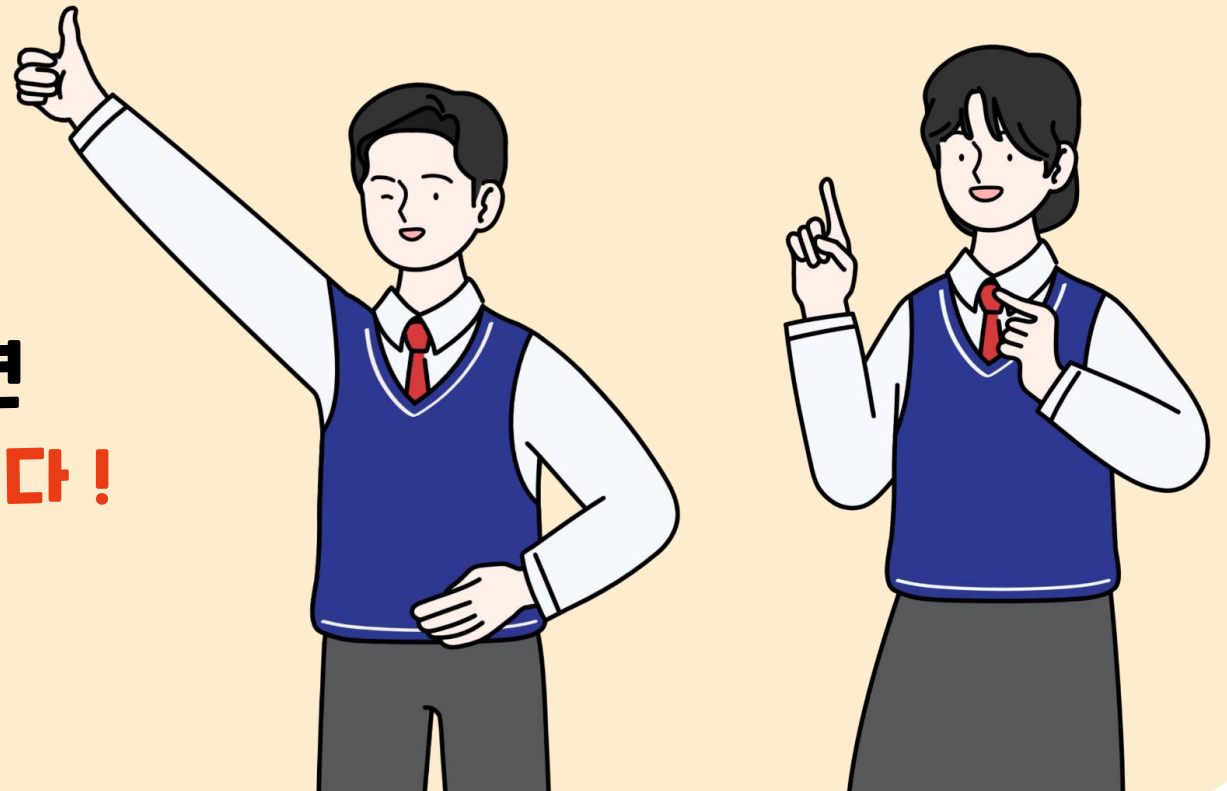
“ 학교전담노무사

직업계고 학교마다 공인노무사를 각각 매칭하여 현장실습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겪는 문제의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 교육, 현장실습 지원 코칭을 하며,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현장실습생을 지원합니다.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발생하는 법률적, 경제적 문제를 담당하며 분쟁 해결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학교 전담 노무사님의 연락처를
실습 전 선생님을 통해 알아둔다면
권리구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 받고 해결하기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 신고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 유해위험업무, 표준협약 미체결, 실습 시간초과, 야간·휴일실습,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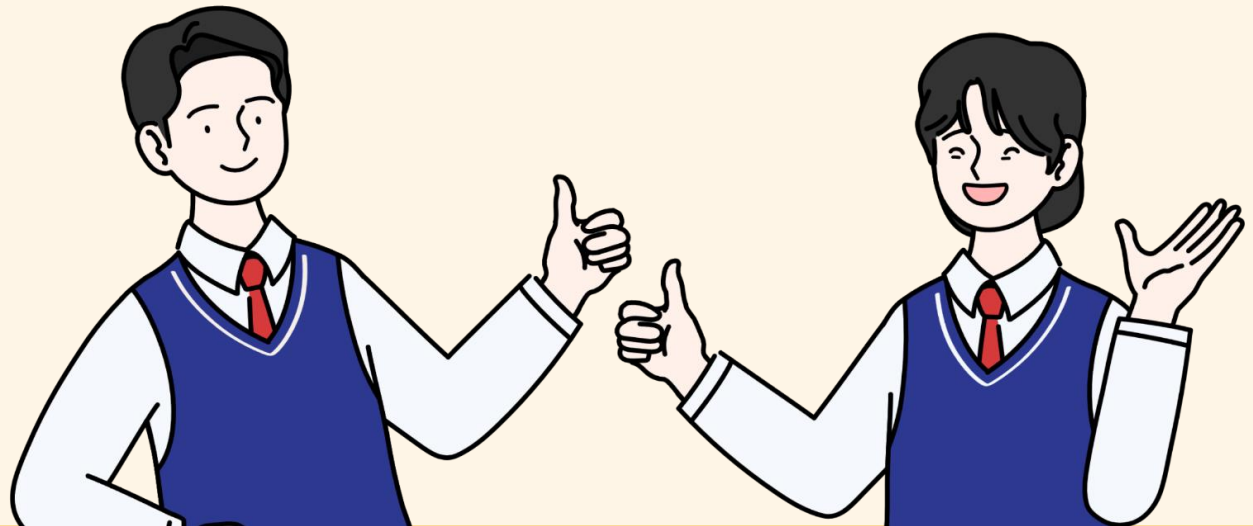
□ 신고센터 연락처(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 됩니다.)

순번	시·도 교육청	대표번호	이메일 주소
1	서울	1544-7695	budangsingo@naver.com
2	부산	051-866-7420	wew280@korea.kr
3	대구	053-231-8152	oani12@korea.kr
4	인천	032-550-1722	http://jci.ice.go.kr
5	광주	062-570-2970	dongt@korea.kr
6	대전	042-616-8369	jsoon11@korea.kr
7	울산	052-220-1965	ue689712@use.go.kr
8	세종	044-320-2244	hrdaa@korea.kr
9	경기	1588-3726	ekjun0527@korea.kr
10	강원	033-258-5365	pujick@korea.kr
11	충북	043-290-2694	indreams12@korea.kr
12	충남	041-640-7531	sej0920@cen.go.kr
13	전북	063-239-3412	ojc345@jbedu.kr
14	전남	1522-1751	surinkim@korea.kr
15	경북	054-805-3437	amuone@gyo6.net
16	경남	055-210-5149	infinite27@korea.kr
17	제주	064-710-0376	windmadosa@korea.kr


중앙취업지원센터 (1599-8297, centralwork@kosaf.go.kr)

교육청별 부당대우신고센터

회사의 부당한 대우로 조기 복교를 하게 된 경우 **심리상담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 추가실습처 발굴**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전환 후의 권리구제

“**현장실습이 끝나고** 취업으로 전환되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취업전환 후에도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에
도움을 구해보자!**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또는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5인 이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고
구제신청**

**노동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접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근로자(노동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노동관계법령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근로자(노동자)들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인 보호위원을 배정하여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

ID_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

1644-3119

**취업전환 후의 권리구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기억해 주세요!**



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권익교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근로권익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근로권익교육 온라인 수강하기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청소년근로권익 센터에서는 기초 노동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바로가기



2023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대상 강의안

감사합니다

